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2일, 장경태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2024. 12. 6.)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4. 8.) 상정 · 축조심사 및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2026. 4. 22.)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장경태 의원)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은 해당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재산을 축적했음. 과거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추징을 선고하였으나 해당 추징금의 일부는 환수되지 못하였음.

지난 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폭로하였음에도 몰수·추징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 노소영이 이혼소송 과정 중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의 존재를 밝힌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어떠한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행위자의 사망 등의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축적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몰수나 추징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 수익 등에 대하여는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몰수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 따르면 제3자에 대해서는 몰수만 가능할 뿐 추징이 불가능한바, 제3자에 대한 몰수 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실현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동찬)

※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고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용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선협의 제3자 독립몰수 허용,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범죄수익에 대한 소급입법 등에 대하여 위헌소지 이유로 반대의견이, 국민의 정서, 소급입법 사례(과거 공소시효 예외 합헌) 등의 이유로 찬성의견이 다수 있었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